

노인요양보호사의 이용자 성희롱 피해경험과 대처행동

신용우¹⁾, 이호용²⁾, 이성기³⁾, 조영일⁴⁾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Behaviors amo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Yong Woo Shin¹⁾, Hoyong Lee²⁾, Seongki Lee³⁾, Youngil Cho⁴⁾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이용자 성희롱 피해경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한 전국 요양보호사 726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희롱 피해경험 및 피해경험 후 대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해 '본인 또는 주변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이다. 둘째, 성희롱 유형에 따른 경험정도는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적, 물리적, 기타 성희롱 경험은 요양복지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보다 높았다. 넷째,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은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노인 가해자의 인지능력 수준과 성행동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 노인요양보호사,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희롱, 대처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caregivers'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and develop detailed coping guideline. For this, I carried out the research based on survey data among 726 caregivers all over the country from October 10th, 2014 to October 30th. I worked out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experiences and coping behaviors and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proportion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r

Received (October 19, 2016), Review Result (November 2, 2016)

Accepted (November 9,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7)

¹02844 Dept.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jazz0615@naver.com

²04763 Dept. Policy, Hanyang Univ.,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hoyongr@hanyang.ac.kr

³02844 Dept. Law, Sungshin Women's Univ.,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jjab0829@naver.com

⁴(Corresponding Author) 02844 Dept.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yicho@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14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로 작성되었습니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caregiver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is 12%. Secondly, the experience level according to a type of the harassment is visual sexual harassment, verbal harassment, physical harassment, and other harassment in order. Thirdly, the rate of visual, physical, and other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s higher in Social Welfare Facility for Senior than in Elderly Care Facility. Lastly, a response of caregivers to the harassment is intermediate-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coping guideline for the harass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elderly harassment offenders' cognitive abilities and sexual behavioral level rather than punishment-obsessed policies.

Keywords : senior caregiver, visual sexual harassment, verbal sexual harassment, physical sexual harassment, coping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청년인구의 감소로 노년층에 대한 보호와 요양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인정하며,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표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요양보호사이다. 이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노인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한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08년 수급자 19만 4천명, 요양보호사 등 관련인력 11만 2천명으로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2013년에는 수급자 35만 5천명, 관련인력 27만 8천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시행 첫해에 비해 이용자수는 1.8배 이상, 관련인력 수는 2.4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89.7%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처우 및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수준 및 노동처우 문제뿐 아니라 업무 중 성희롱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노동 인권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5].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성희롱 경험은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된 조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0-30%, 입소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0-85%가 요양업무를 하면서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을 경험하였다[6]. 경기 안산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0.1%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7]. 충남 천안지역 요양보호사 대상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5.2%가 노인서비스 과정에서 불쾌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8]. 대전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19.9%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광주, 전남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39.7%가 이용자에게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시각적 성희롱 경험은 12.3%,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16.9%, 육체적 성희롱 경험은 10.5%에 달했다[1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중 52%가 이용자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강원 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38%가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성희롱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 대한 공포감을 경험한다[13]. 이에 덧붙여서,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가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면 수술실 간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상관을 보였다[14]. 욕설 및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여성 의사들은 우울증상을 보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사건을 재경험하고, 경험한 사건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기를 피하고, 과도한 각성상태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 분노, 불면증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한다[16].

성희롱 경험은 피해자의 심리적 건강 뿐 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희롱 경험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많이 경험할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상승으로 이어졌다[12]. 이에 덧붙여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애착, 직무를 통한 인생목표 달성, 직무중요도, 직무몰입과는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17]. 특히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과 직무만족도의 부적 상관의 크기는 다른 직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고[17][18], 낮은 직무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소진으로 연결되었다[19].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신체·언어적 폭력은 이직의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결론에서 요양보호사의 성희롱피해를 막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는 미흡하였다[13][20].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심리건강의 증진과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위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이용자 성희롱 경험실태를 파악하여,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실태를 성희롱 유형별, 이용자 유형별로 파악한다.
- 둘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 후 대응방법을 파악한다.
- 셋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실태를 바탕으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7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요양시설 근무자는 서울지역 225명, 경기지역 175명, 기타지역 65명이며, 재가시설 근무자는 서울지역 125명, 경기지역 105명, 기타지역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거 설문지중 성실하게 응답한 726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인 특성 17문항, 장기요양대상자로부터 당한 성희롱에 대한 문항 29문항, 성희롱 후 대응에 대한 문항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종교, 학력, 세대에서 생활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사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현재 직장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서비스 종류, 근무형태, 보수, 구체적 업무, 근무시간, 근무 동기로 구성하였다. 성희롱의 유형 구별은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의 구분에 따라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물리적 성희롱으로 구분하였으며[21], 기타 성희롱을 추가하였다. 성희롱 피해경험은 28문항으로 27문항은 1-5점의 리커트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피해경험이 많고, 심각함을 의미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7문항에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4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9문항에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4이다. 물리적 성희롱은 6문항에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0이다. 기타 성희롱은 6문항에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6이다. 성희롱 피해경험 중 1문항은 가해자를 묻는 문항으로 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련 문항, 근무형태 문항, 담당업무 관련 문항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성희롱 피해경험 및 피해경험 후 대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가해자 관련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중 남성이 6.89%, 여성이 92.56%이다. 연령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59.64%, 40세 이상 50세 미만 22.87%, 60세 이상 7.71%, 30세 이상 40세 미만 5.51%, 30세 미만이 3.31%이다. 응답자 중 81.68%가 기혼자였으며, 종교는 기독교 32.23%, 불교 28.24%, 무교 21.49%, 천주교 16.25%이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57.02%, 대학교 졸업 이상 24.24%, 중학교 졸업이상 13.22%,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4.27%이다. 주생활비 부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55%, 본인 31.40%, 공동부담 11.02%, 자식 3.72%, 부모 11.02%이다. 요양보호사 경력은 66.67%가 3년 이상의 경력자이고, 31.41%이 3년 미만이었다. 현 직장의 근무 경력은 50.42%가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 직장의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65.29%가 30인 이상이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답하였다. 근무 장소는 요양시설이 75.07%, 재가노인복지시설 19.70%이다. 응답자의 94%이상이 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61.29%, 방문요양 28.71%, 단기보호 5.16%, 방문목욕 3.8%이다.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가 33.88%, 시간근무 26.03%, 1일 3교대 19.42%, 기타 10.88%, 24시간 격일교대 5.37%이다. 보수 형태는 월급 86.78%, 시급 11.02%이다. 담당 업무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고, 해당 업무와 주요업무 두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청결유지는 해당업무로 72.59%, 주요업무로 12.53%, 식사와 복약보조는 해당업무로 69.83%, 주요업무로 12.67%, 배설관리는 해당업무 67.63%, 주요업무 11.57%, 정서적 지원은 해당업무 71.21%, 주요업무 9.37%, 직접간병은 해당업무 35.81%, 주요업무 5.37%가 응답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2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변인	범주	n(%)
성별	남성	50(6.89)
	여성	672(92.56)
	무응답	4(0.55)
나이	만 30세 미만	24(3.31)
	만 30세 이상~만 40세 미만	40(5.51)
	만 40세 이상~만 50세 미만	166(22.87)
	만 50세 이상~만 60세 미만	433(59.64)
	만 60세 이상	56(7.71)
	무응답	7(0.96)
결혼여부	미혼	49(6.75)
	기혼	593(81.68)

	이혼	31(4.27)
	사별	46(6.34)
	기타	2(0.28)
	무응답	5(0.68)
종교	불교	205(28.24)
	기독교	234(32.23)
	천주교	118(16.25)
	무교	156(21.49)
	기타	4(0.55)
	무응답	9(1.24)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31(4.27)
	중학교 졸업 및 중퇴	96(13.22)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414(57.02)
	대학교 졸업이상	176(24.24)
	무응답	9(1.25)
생활비 부담	본인	228(31.40)
	배우자	367(50.55)
	자식	27(3.72)
	부모	15(2.07)
	가족이 공동부담	80(11.02)
	무응답	9(1.24)
요양보호사 경력	1년 미만	62(8.54)
	1년 이상~3년 미만	166(22.87)
	3년 이상~5년 미만	195(26.86)
	5년 이상~10년 미만	227(31.27)
	10년 이상	62(8.54)
	무응답	14(1.92)
현재 직장의 근무 경력	1년 미만	127(17.49)
	1년 이상~3년 미만	222(30.58)
	3년 이상~5년 미만	172(23.69)
	5년 이상~10년 미만	157(21.63)
	10년 이상	37(5.10)
	무응답	11(1.51)
직원 수	15인 미만	75(10.33)
	15인 이상~20인 미만	59(8.13)
	20인 이상~30인 미만	98(13.50)
	30인 이상~50인 미만	239(32.92)
	50인 이상	235(32.37)
	무응답	20(2.75)

변인	범주	n(%)
근무 장소	양로시설	4(0.55)
	노인공동생활가정	8(1.10)
	요양시설	545(75.0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1.10)
	재가노인복지시설	143(19.70)
	무응답	18(2.48)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n=310)	방문요양	89(28.71)
	방문목욕	13(4.19)
	주야간보호	190(61.29)
	단기보호	16(5.16)
	방문간호	2(0.65)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교대	39(5.37)
	1일 2교대	246(33.88)
	1일 3교대	141(19.42)
	시간근무	189(26.03)
	기타	79(10.88)
	무응답	32(4.42)
보수 형태	월급	630(86.78)
	일급	4(0.55)
	시급	80(11.02)
	기타	5(0.69)
	무응답	7(1.06)
담당 업무 (복수응답가능)	해당업무/주요업무	527(72.59)/91(12.53)
	대상자의 청결유지	507(69.83) / 92(12.67)
	식사와 복약보조	491(67.63) / 84(11.57)
	배설 관리	517(71.21) / 68(9.37)
	정서적 지원	260(35.81) / 39(5.37)
근무 시간 (복수응답가능)	사업소에서 일하며 직접 간병	260(35.81) / 39(5.37)
	조조(6시 ~ 8시)	186(12.70)
	오전(8시 ~ 12시)	412(28.12)
	오후(12시 ~ 17시)	387(26.42)
	야간(17시 ~ 11시)	249(17.00)
	심야(22시 ~ 익일 7시)	231(15.77)
월평균 급여액	60만원 미만	41(5.65)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7(2.34)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3(3.17)
	10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76(10.47)
	120만원 이상	555(76.45)
일급 및 시급 (n=419)	무응답	14(1.92)
	7천원 미만	219(30.17)
	7천원 이상 ~ 8천원 미만	131(18.04)
	8천원 이상 ~ 9천원 미만	28(3.86)
	9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14(1.93)
근무 동기	1만원 이상	27(3.72)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221(30.44)

가족 중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51(7.02)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155(21.35)
전문직 종사자로 일하고 싶어서	164(22.59)
기타	30(4.13)
무응답	105(14.47)

3.2 성희롱 피해 경험

연구대상자 본인 또는 주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은 표 2와 같다. 본인 또는 주변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12%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용자로부터’가 10%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1%, ‘이용자와 가족 모두로부터’가 0.14%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17.08%이고, ‘없다’는 응답이 64%이다. 근무 장소에 따라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요양시설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로부터’ 피해(12.59%)와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2.80%)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비율은 요양시설이 높았고(18.35%), ‘없다’는 비율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더 높았다(67.13%).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 피해 유형은 표 3과 같다. 시각적 성희롱을 평균이 높은 문항 순으로 살펴보면 ‘성적 관련이 있는 내 몸의 일부를 응시한다’(SD=1.88, SD=1.15), ‘섹스 파트너처럼 쳐다본다’(M=1.87, SD=1.12), ‘성기 만지는 것을 보여준다’(M=1.68, SD=1.03), ‘타인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 한다’(M=1.66, SD=0.99),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준다’(M=1.60, SD=0.90), ‘성적 관련이 있는 내 몸의 일부를 강제로 노출시킨다’(M=1.47, SD=0.80), ‘성적인 사진을 보여준다’(M=1.35, SD=0.63) 순이다.

언어적 성희롱을 평균이 높은 문항 순으로 살펴보면 ‘나에게 성 관련 농담을 한다.’(M=1.96, SD=1.14), ‘나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M=1.64, SD=0.87), ‘성적인 관점에서 내 몸 또는 몸 전체의 일부를 평가한다.’(M=1.64, SD=0.88), ‘성적 행동(예. 포옹 또는 키스)을 요청한다.’(M=1.53, SD=0.85), ‘나의 성적 매력이나 능력에 대해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한다.’(M=1.52, SD=0.77), ‘내 자신의 성적 경험이나 섹스에 대한 내 의견을 물어본다.’(M=1.42, SD=0.64),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데이트하기를 강요한다.’(M=1.39, SD=0.64), ‘내가 성적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M=1.38, SD=0.63), ‘내가 성적 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M=1.34, SD=0.71)의 순서이다.

물리적 성희롱을 평균이 높은 문항 순으로 살펴보면 ‘일부러 내 몸의 일부에 접촉한다.’(M=1.78, SD=1.07), ‘강제적으로 내 몸(영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려고 한다.’(M=1.70, SD=0.99), ‘강제로 나를 껴안으려고 한다.’(M=1.45, SD=0.59), ‘내게 키스하려고 한다.’(M=1.42, SD=0.69), ‘침대에 나를 끌어당겨 앉힌다.’(M=1.41, SD=0.76), ‘나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M=1.34, SD=0.72)의 순이다.

[표 2]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빈도

[Table 2] Frequency of sexual harassment

피해 경험	빈도(%)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신이 직접 또는 주변의 제3자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자로부터	78(10.74)	59(10.83)	18(12.59)
있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13(1.74)	9(1.65)	4(2.80)
이용자와 가족 모두로부터	3(0.14)	3(0.55)	0(0)
모르겠다	124(17.08)	100(18.35)	20(13.99)
없다	466(64.19)	343(62.94)	96(67.13)

기타 성희롱을 평균이 높은 문항 순으로 살펴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한다.’($M=1.52, SD=0.86$)와 ‘체위변경 등 환자를 돌볼 때 과도하게 몸을 밀착하거나 신체를 기대다.’($M=1.52, SD=0.87$)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나에게 안마나 신체를 더듬도록 요구한다.’($M=1.41, SD=0.72$), ‘자에게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기도 한다.’($M=1.29, SD=0.56$),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온다.’($M=1.26, SD=0.46$),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온다.’($M=1.24, SD=0.44$)의 순이다.

[표 3]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유형

[Table 3] Types of sexual harassment

피해 유형	전체집단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t값
	M	SD	M	SD	M	SD	
시각적 성희롱	1.68	0.84	1.76	0.86	1.42	0.68	$p<.001$
나를 섹스 파트너처럼 쳐다본다.	1.87	1.12	1.96	1.17	1.53	0.88	4.822
나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여준다.	1.35	0.63	1.35	0.60	1.30	0.65	0.830
나에게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준다.	1.60	0.90	1.64	0.91	1.46	0.85	2.063
성적으로 관련 있는 내 몸의 일부를 응시한다.	1.88	1.15	1.99	1.22	1.53	0.83	5.207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내 몸의 일부를 강제로 노출시킨다.	1.47	0.80	1.51	0.85	1.30	0.57	3.499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한다.	1.68	1.03	1.78	1.08	1.32	0.70	6.009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자위행위를 한다.	1.66	0.99	1.77	1.06	1.29	0.56	7.113
언어적 성희롱	1.57	0.71	1.59	0.72	1.47	0.67	$p=.068$
나에게 성 관련 농담을 한다.	1.96	1.14	2.04	1.17	1.67	0.97	3.826
나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1.64	0.87	1.65	0.85	1.59	0.90	0.735
성적인 관점에서 내 몸 또는 몸 전체의 일부를 평가한다.	1.64	0.88	1.69	0.90	1.46	0.74	3.043
나의 성적 매력이나 능력에 대해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한다.	1.52	0.77	1.53	0.78	1.46	0.72	1.005
내 자신의 성적 경험이나 섹스에 대한 내 의견을 물어본다.	1.42	0.64	1.42	0.63	1.43	0.72	-0.211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데이트하기를 강요한다.	1.39	0.64	1.39	0.63	1.37	0.65	0.239

성적 행동(예. 포옹 또는 키스)을 요청한다.	1.53	0.85	1.56	0.88	1.41	0.70	2.107
내가 성적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1.38	0.63	1.38	0.61	1.37	0.65	0.082
내가 성적 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1.34	0.71	1.33	0.57	1.34	0.65	-0.163
물리적 성희롱	1.53	0.72	1.58	0.75	1.35	0.63	p<.001
일부러 내 몸의 일부에 접촉한다.	1.78	1.07	1.87	1.12	1.48	0.83	4.569
강제적으로 내 몸(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려고 한다.	1.70	0.99	1.77	1.03	1.41	0.78	4.436
내게 키스하려고 한다.	1.42	0.69	1.46	0.73	1.26	0.50	3.779
침대에 나를 끌어 당겨 앉힌다.	1.41	0.76	1.43	0.69	1.32	0.62	1.797
강제로 나를 껴안으려고 한다.	1.45	0.59	1.48	0.78	1.34	0.70	2.077
나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	1.34	0.72	1.36	0.60	1.25	0.54	2.076
기타 성희롱	1.38	0.57	1.41	0.59	1.26	0.49	p=.002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온다.	1.26	0.46	1.27	0.48	1.19	0.40	1.947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온다.	1.24	0.44	1.25	0.44	1.19	0.39	1.454
나에게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기도 한다.	1.29	0.56	1.31	0.56	1.24	0.54	1.27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한다.	1.52	0.86	1.57	0.91	1.34	0.66	3.274
나에게 안마나 신체를 더듬도록 요구한다.	1.41	0.72	1.44	0.75	1.28	0.58	2.548
체위변경 등 환자를 돌볼 때 과도하게 몸을 밀착하거나 신체를 기댄다.	1.52	0.87	1.58	0.91	1.30	0.66	3.997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요양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성희롱 피해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성희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9.539)=4.838, p<.001$).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사가 경험하는 시각적 성희롱($M=1.42, SD=0.68$)보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사가 경험하는 시각적 성희롱($M=1.76, SD=0.86$)이 더 높았다. 언어적 성희롱 경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657)=1.828, p=.068$). 물리적 성희롱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4.142)=3.616, p<.001$).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물리적 성희롱($M=1.35, SD=0.63$)보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물리적 성희롱($M=1.58, SD=0.75$)이 더 높았다. 기타 성희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8.788)=3.078, p=.002$).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기타 성희롱($M=1.26, SD=0.49$)보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기타 성희롱($M=1.41, SD=0.59$)이 더 높았다.

3.3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대응

[표 4]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대응

[Table 4]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피해 대응	전체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t값 <i>p</i> =.0341
	M	SD	M	SD	M	SD	
성희롱, 성폭력 대응	3.46	0.54	3.43	0.50	3.57	0.65	<i>p</i> =.0341
성희롱을 하는 노인에게 성희롱적 언어와 행동을 삼가도록 이야기 한다.	3.79	1.03	3.81	1.00	3.72	1.13	0.870
성희롱을 하는 노인을 이해하면서 달랜다.	3.39	1.17	3.39	1.12	3.36	1.29	0.220
성희롱을 하고 있는 노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	3.80	1.05	3.78	1.04	3.81	1.07	-0.207
수첩에 상세하게 사건을 기록한다.	3.00	1.28	2.93	1.26	3.30	1.25	-2.790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3	1.26	2.92	1.22	3.46	1.30	-4.205
성희롱에 집착하는 노인에게 보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고 조용히 참는 것이다.*	3.64	1.16	2.40	1.14	2.13	1.19	2.236
사건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관련기관(고문,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대해 사건을 보고한다.	3.02	1.21	2.29	1.17	3.39	1.22	-3.817
성희롱자와 관련 있는 제3자(동료, 상사, 친구 등)에게 성희롱의 사실을 알린다.	3.48	1.14	3.46	1.11	3.54	1.22	-0.664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다른 사람과 혼자 있거나 신체 접촉이 요구되는 상황)을 엄격하게 피해야 한다.	3.73	1.11	3.69	1.08	3.91	1.11	-1.910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더라도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3.28	1.26	2.79	1.22	2.50	1.35	2.066
성희롱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3.48	1.22	3.46	1.17	3.54	1.37	-0.575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인사 불이익이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다.*	3.80	1.14	2.22	1.12	2.10	1.17	1.029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다.*	3.73	1.13	2.30	1.11	2.09	1.13	1.837
성희롱은 내가 노력하면 방지할 수 있다.	3.20	1.23	3.16	1.19	3.34	1.33	-1.132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는 역채점 하였다. 1점(매우 그렇다), 2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지 않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은 표 4와 같다. 평균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M=3.80, SD=1.05)와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인사 불이익이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다’(M=3.80, SD=1.14)가 가장 높았다. ‘성희롱 언어와 행동을 삼가도록 이야기 한다’(M=3.79, SD=1.03),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다른 사람과 혼자 있거나 신체 접촉이 요구되는 상황)을 엄격하게 피해야 한다’(M=3.73, SD=1.11),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다’(M=3.73, SD=1.13), ‘성희롱에 집착하는 노인에게 보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고 조용히 참는 것이다’(M=3.64, SD=1.16), ‘(동료, 상사, 친구 등)에게 성희롱의 사실을 알린

다($M=3.48, SD=1.14$), '성희롱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M=3.48, SD=1.22$), '성희롱을 하는 노인을 이해하면서 달랜다'($M=3.39, SD=1.17$), '성희롱을 숨기는 이유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더라도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M=3.28, SD=1.26$), '성희롱은 내가 노력하면 방지할 수 있다'($M=2.20, SD=1.23$),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M=3.03, SD=1.26$), '사건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관련기관(고문,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대해 사건을 보고한다'($M=3.02, SD=1.21$), '수첩에 상세하게 사건을 기록한다'($M=3.00, SD=1.28$) 순으로 나타난다.

요양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의 성희롱과 성폭력 대응이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응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64.449)=-2.143, p=.0341$). 요양보호사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응($M=3.43, SD=0.50$)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응($M=3.57, SD=0.65$)이 보다 적극적이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응하여 요양보호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 대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참여자의 12.5%가 본인 또는 주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모르겠다'는 응답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36%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의 39.7%와 38%가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0][12]. 본 연구참여자의 1.7%가 이용자 가족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보호자 성희롱 경험이 1.1%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9].

본 연구결과 성희롱 유형에 따른 경험정도는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유형에 따른 경험 정도가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10],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성희롱 경험이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21]. 이용자가 고령의 노인이므로 육체적 쇠퇴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행동의 부자유스러워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기타 방식의 성희롱 보다 간접적인 시각적 성희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사이에서 주된 성희롱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다른 변인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의 94%가 근무하는 요양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성희롱 경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시각적 성희롱, 물리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의 경우 요양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보다 성희롱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성희롱은 요양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근무자간 경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요양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요양보호사보다 재가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9]. 이런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일 2교대로 근무 등 요양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길어 이용자와 접촉할 시간이 많은 것이 원인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성희롱은 성적으로 관련 있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부위를 응시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성적 파트너처럼 쳐다보거나, 노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요양보호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다. 이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시각적 성희롱의 형태가 성적 대상을 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요양보호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고, 노인의 성적인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였다[10].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성희롱 경험 선행연구에서 '시각적 성희롱으로 특정부위를 쳐다보거나 훑어봄', '징그러운 표정으로 워크 함',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눈길이나 몸동작'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하다[22].

본 연구에서 언어적 성희롱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이용자 자신이나 타인의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관점으로 요양보호사의 몸을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다. 이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언어적 성희롱의 형태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성경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였다[10].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성희롱 경험 선행연구에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관계 물음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하다[22].

본 연구에서 물리적 성희롱은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몸에 접촉하거나, 강제로 요양보호사의 엉덩이, 가슴 등 성적인 신체부위에 접촉하려 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다. 이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성희롱의 형태가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접촉한다는 것과 유사하였다[10].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성희롱 경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성희롱으로 의도적으로 몸을 스치거나 기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시킴, 간호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하다[22].

본 연구에서 기타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체위변경 등 환자를 돌볼 때 과도하게 몸을 밀착하거나 신체를 기대는 행동, 요양보호사에게 안마나 신체를 더듬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응 전체 평균은 '보통이다'(3점)와 '그렇다'(4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M=3.46$, $SD=0.54$), 중간수준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대처행동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10].

대응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 성희롱 피해를 숨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함, 성희롱 행위를 무시하고 참음 등 소극적인 대처 행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폭력 대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제언은 아래와 같다.

선행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을 근로자 개인,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 국가 기관 수준에서 각기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23].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고, 고용의 형태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되거나 피해자의 고용상황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양보호사 성희롱은 가해자가 서비스 수급자이거나 노인 환자이므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차이점이 있다. 가해자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겠으며, 요양보호사 제도를 탄생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노인 수급자를 보호, 간병, 요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1]. 따라서 대응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처럼 가해자 처벌 중심이 되기보다 가해자의 인지능력 수준과 성행동의 수준에 따라 대응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는 치매 노인의 부적절한 성행동시 대처에 대해 대응 행동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24].

응답자의 17.8%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모르겠다’고 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입은 성희롱 피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사 규칙, 사규 등에 성희롱 방지와 해결을 위한 정책을 명시하고, 회사의 성희롱 관련 정책을 교육 홍보하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 소재자를 보급하는 등 가능한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22].

이용자의 성희롱 양상이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추세보다 간접적인 시각적 성희롱이 우세하고, 요양보호사의 대응이 소극적인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비공식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대응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믿음직하고 직급이 높은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성희롱 사건을 합의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주가 직접 고충상담원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5].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속해 있는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가 속해 있는 시설의 시설장이 중재자로 나서서 가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요양보호사에게 인사 상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응방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모색해 보았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노인의 성행동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문제는 가족들이 노인을 간병할 때는 비공식적인 보호체계로 묵인되었던 노인의 성(Sexuality)이 공식적인 보호체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들어오면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26]. 따라서 더욱 섬세한 대응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속해 있는 노인의 성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eong-Kyung Choi, LEGAL ASSIGNMENT ASSOCIATED WITH THE SEXUAL HARASSMENT ON LONG-TERM CARE WORKERS,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2016), Vol.16, No.1, pp.365-391.
- [2]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2&cnpClsNo=1&menuType=cnpcls>, Dec 15 (2016).
- [3] Chan-Hui Jeon, Labor Human Rights for Car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 Vol.3, No.5, pp.234-242.
- [4] http://m.nhis.or.kr/comWeb/f/wcfc00_view.html?boardId=16043, Dec 30 (2015).
- [5]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341107139843.hwp, Jul 1 (2012).
- [6]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12-BR-20_0.pdf, Nov 26 (2013).
-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575&cID=10803&pID=10800, Dec 14 (2015).
- [8]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98392, Dec 28 (2015).
- [9] Eun ju Seo, Souk Young Kim,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s among Care Helpers, Korean J Adult Nurs (2012), Vol.24, No.6, pp.607-614.
- [10] Jeong Sun Kim, Hyun Sook Kim, Kye Ha Kim,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Behaviors amo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 Korean Gerontol Nurs (2013), Vol.15, No.1, pp.21-31.
- [11] Boram Hwang, Jeong Hee Kang, Eun Kyoung Yoo, Ki Hyok Youn, Jin Yeol Lee, A Survey on the Client Violence Experiences of Careworkers Working at Nursing Homes in Busa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14), Vol.25, No.1, pp.187-214.
- [12] Koung Ran Park, Hye Kyung Suh, Yun Soon Koh, Effect of Sexual Harrassment on Job Stress among Care-givers for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5), Vol.35. No.1. pp.171-190.
- [13] Eun Young Lee, Hee Sun Kang, Kyung Hee Kim, Kyung Sook Park, Caregivers` Experience of Violence and Coping with It in Nursing Home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2), Vol.23, No.2, pp.134-143.
- [14] Eun Kyung Park, Yeon Kyung Na,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Damages and Self-esteem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2015), Vol.9, No.4, pp.266-274.

- [15] Ji-Hwan Kim, Ja Young Kim, Seung-Sup Kim, Workplace Viol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edical Residents in South Korea : 2014 Korean Interns & Residents Survey,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5), Vol.39, pp.75-95.
- [16] Youn-Jung Son, Hyun-Hee Gong, Mi-Ae You, Seong-Sook Kong, Relationships between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Resili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Vol.17, No.1, pp.515-530.
- [17] Jae Cheul Lee, Hyo Lyun Roh, Jong Soo Kang, Affects of Job stress on Job involvement of Caregiv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2012), Vol.51, No.4, pp.229-245.
- [18] Hae Ja Lee, Sun Ho Kwon,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among Caregiv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1), Vol.51, pp.125-144.
- [19] Chang Bum Kang, A Study o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1), Vol.54, pp.193-209.
- [20] Ki Wook Um, In A Park, The Effects of Care Workers` Experience in Injuries and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5), Vol.43, pp.149-172.
- [21]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ArchiveDetail.do?rfile_no=200302688315&ritem_no=00000000018, Jul 1 (1999).
- [22] Gong-Ju Park, Hyang-Mi Jung, Mee-Kyung Kim, Sexual Harassmen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 Vol.8, No.4, pp.95-107.
- [23] Pilwha Chang, Jeonghee Kim, Yeanson An, Myoungseon Lee, Mikyung Lee, Sexual Hrrassment at Workplace and its Countermeasurement, *Women's Studies Review* (1994), Vol.11, pp.113-145.
- [24] Gahyun Youn, Coping with the Sex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Elderly Information Center*, Seoul, Korea (2012)
- [25]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887>, Sep 11 (2014).
- [26] Guil sung Kwak, Yong soon Park, Care-takers' Attitudes and Perceptions regarding Sexuality of the Elderly with Aged-Related Disea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4), Vol.34, No.4, pp.897-916.